

IAEA - 日本

「早期通報」「相互援助」條約의 概要

日本政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작년 9월 총회에서 채택한 「早期通報」「相互援助」의 2개 조약에 서명하고 3월 13일의 각의에서 이번의 通常國會에 제출해서 승인을 구할것을 결정했다. 여기서主要條項을 중심으로 이 두 조약의 개요를 소개한다.

早期通報條約

이 條約의 締結國은,

原子力活動이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認識하며,

원자력사고를 방지하는 것 및 어떠한 원자력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원자력활동에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는 것, 또 취해지고 있음을 유의하며,

원자력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에서 국제협력을 한층더 강화할 것을 희망하며,

국경을 넘어서며 치는 방사선의 영향이 최소의 것으로 그치도록 각국이 원자력사고에 대한 관련정보를 가능한 한 조기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분야에서의 정보교환에 관한 2國間 및 多數國間決定이 有用하다는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協定했다.

第 1 條 適用範圍

1. 이 條約은 締結國 또는 그 管轄 혹은 管理下에 있는 自然人 혹은 法人이 2 항에 정하는 시설 또는 활동에 관계하는 사고로서 방사성물질을 방출하고 있으며 또는 방출할 우려가 있고, 또한 他國에 대해 방사선안전에 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경을 넘는 방출을 미치고 있으며 또는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의 경우에 적용한다.

2. 1 항의 시설 및 활동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 (a) 모든 原子炉 (所在의 如何를 不拘).
- (b) 모든 核燃料사를 施設
- (c) 모든 放射性廢棄物 取扱施設
- (d) 核燃料 또는 放射性廢棄物의 輸送 및 貯藏
- (e) 農業, 工業, 医療, 科學 및 研究의 목적을 위한 放射性同位元素의 제조, 이용, 저장, 폐기 및 수송
- (f) 宇宙物体에서의 發電을 위한 放射性 同位元素의 이용

第 2 條 通報 및 情報

前條에 규정하는 사고(以下「原子力事故」라

함)가 발생했을 때는 同條에 規定하는 締結 國 은,

(a) 직접으로 또는 國際原子力機構(以下「機構」라 함)를 통해서 前條에 정하는 物理的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機構에 대해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종류, 발생시각 및 적당한 경우에는 그 정확한 장소를 곧 바로 통보한다.

(b) 직접 또는 機構를 통해서 (a)에 규정하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機構에 대해 그 나라에서의 방사선의 영향을 최소의 것으로 그치기 위한 提供可能한 정보로서 제 5 조에서 정한 것을 신속히 제공한다.

第 3 條 他의 原子力에 關한 事故

締約國은 방사선의 영향을 최소로 하기 위해 제 1 조에 규정하는 사고 이외의 원자력에 관한 사고의 경우에도 通報를 할 수가 있다.

第 4 條 機構의 任務

機構는,

(a) 締約國, 加盟國, 제 1 조에서 정하는 物理的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其他의 나라 및 관계하는 政府間 國際機構(以하 「國際機構」라 함)에 대해 제 2 조(b)의 규정에 의해 受領한 通報를 곧바로 전달한다.

(b) 모든 締約國, 加盟國 또는 관계하는 國제 기구에 대해서도 그 요청에 따라서 제 2 조(b)의 규정에 의해 수령한 정보를 곧바로 제공한다.

第 5 條 提供되는 情報

1. 제 2 조(b)의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의 데이터 中 그 時點에서 通報締約國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된다.

(a) 원자력사고의 발생 時刻, 적당할 때는 그 정

●이 條約의 締結國은, 어떠한 원자력 사고의 영향도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

확한 장소 및 그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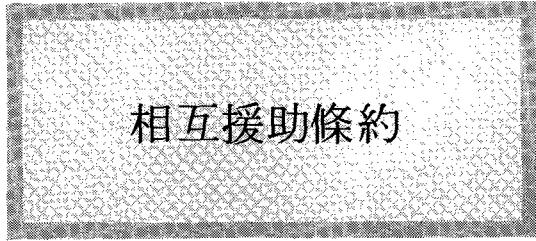
- (b) 원자력사고에 관계하는 시설 또는 활동
- (c) 국경을 넘는 방사성물질의 放出에 관계하는 원자력사고에 대해서 想定되며 또는 確定된 원인 및 예상되는 進展.
- (d) 방사성 물질의 방출의 전반적인 特징 (實行可能한, 또는 적당한 限 방사성물질의 방출의 성질, 예상되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形態量, 구성 및 有効 높이를 포함)
- (e) 提供의 時點, 예측되는 氣象學的 또는 水文學的 조건에 관한 정보로서 국경을 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 한 것
- (f) 국경을 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관한 환경감시의 결과
- (g) 이미 취해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敷地 밖의 방호조치
- (h) 방사성물질 방출의 거동에서 予見되는 것.
2. 1 항의 정보는 긴급사태의 진전(긴급사태의 終結의 예상 또는 事實을 포함)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에 의해 적당한 간격으로 補充한다.
3. 제 2 조(b)의 규정에 의해 수령된 정보는 當該情報가 通報締約國에 의해 秘密의 것으로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급에 關해 제한 없이 사용된다.

第 6 條 協議

第 7 條 權限이 있는 當局 및 連絡上의 當當局

第 8 條 締約國에 對한 援助

(第 9 ~ 17 條 省略)



相互援助條約

이 條約의 締約國은,
원자력활동이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며,
원자력사고를 방지하는 것 및 어떠한 원자력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그 영향을 최소의 것으로 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원자력활동에서의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한 조치가 취해져 왔다는 것, 또 취해지고 있음에留意하며,
원자력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에서의 국제협력을 한층더 강화할 것을 회망하며,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원조의 신속한 제공을 쉽게 하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 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분야에서의 상호원조에 관한 2國間 및 多數國間 決定이 有用하다는 것에留意하며,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에 관한 상호긴급원조의 결정을 위한 指針 작성에서의 國際原子力機構의 활동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協定했다.

第 1 條 一般規定

1. 締約國은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의 경우에서 그 영향을 최소의 것으로 그치며 및 방사성물질의 방출의 영향에서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원조를 쉽게 하기 위해 이 조약에 따라서 締約國 사이에서 및 國際原子力機構(이하 「機構」라 함)와 협력한다.
2. 1의協力を 용이하게 하기 위해 締約國은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 사태의 경우에 생

길 수 있는 傷害 및 損害를 방지하고 또는 최초의 것으로 하기 위해 2國間 혹은 多數國間 決定에 대해서 또는 적당한 경우에는 이들을組合시킨 것에 대해서 合意할 수가 있다.

3. 締約國은 國際原子力機構憲章 속에서 활동하는 機構에 대해 이 조약에서 정하는 締約國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며, 쉽게하며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 이 조약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요청한다.

第 2 條 援助의 提供

1. 締約國은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의 경우(當該사고 또는 긴급사태가 當該締約國의 領域內 또는 그 管轄 혹은 管理下에서 발생한 것인가 아닌가를 不問)에서 원조를 필요로 할 때는 직접으로 혹은 機構를 통해서 他의 締約國에 대해 또는 機構 혹은 적당한 경우에는 他의 政府間國際機構(이하 「國際機構」라 함)에 대해서 원조를 요청할 수가 있다.

2. 원조를 요청하는 締約國은 필요한 원조의 범위 및 종류를決定하며 더불어 실행가능할 때는 원조제공자에 대해서 當該 원조제공자가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로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한 원조의 범위 및 종류를 要請締約國이 決定할 수가 없을 때는 요청체약국 및 원조제공자는 협의를 하여 필요한 원조의 범위 및 종류를 결정한다.

3. 원조의 요청을 받은 締約國은 빨리 요청된 원조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닌지 및 줄 수 있는 원조의 범위 및 조건을 결정하여 직접 또는 機構를 통해서 要請締約國에 通報한다.

4. 締約國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원자력 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의 경우에서의 他의 締約國에 대한 원조의 제공을 위해 이용가능한 것이 될 수 있는 專門家, 機材 및 資料를 當該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 특히 財政的 조건과 함께 명백히하고 機構에 통보한다.

5. 어떤 締約國도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의 영향을 받은 者의 他의 締約國의 領域 내에서의 치료 또는 他의 체약국의 영역 내로의 일시적인 이전에 관해서 원조를 요청할 수가 있다.

6. 機構는 그 憲章에 따라서 또한 이 조약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의해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의 경우에서의 要請締約國 또는 加盟國의 원조의 요청에 응한다.

- (a) 이 목적을 위해 配分된 적당한 자원을 이용 가능하게 할 것.
- (b) 他의 나라 및 國際機構로서 機構의 정보에 의해 필요한 자원을 가지는 가능성이 있다 고 인정된 것에 대해 當該 요청을 신속히 전달할 것.
- (c) 要請國의 요청이 있을 때는 (a) 또는 (b)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할 수 있는 원조를 국제적으로 조정할 것

第3條 援助의 指導 및 管理

第4條 權限이 있는 當局 및 連絡上의 當局

第5條 機構의 任務

第6條 秘密性 및 公表

第7條 経費의 償還

1. 援助提供者는 要請國에 대해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원조의 제공을 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검토함에 있어서 원조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a)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의 종류
- (b) 원자력사고 또는 방사선 긴급사태의 발생 장소.

(c) 開發途上國의 必要

(d) 원자력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의 특별 필요

(e) 기타의 關聯 要因

2. 원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유상으로 제공될 때는 요청국은 원조제공자를 위해 행동하는 者(團體를 포함)가 제공하는 役務에 요하는 경비 및 원조에 관계되는 모든 경비(當該 要請國이 직접 지불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限한다)를 원조제공자에 상환한다. 별다른 合意가 없는 한 상환은 원조제공자가 요청국에 청구한 후 신속히 행해져야 하며 또 現地 경비 이외의 경비 상환은 자유로이 移轉할 수가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2 항의 규정에 不拘하고 원조제공자는 언제라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상환의 청구를 포기 또는 상환의 연기에 동의할 수가 있다. 이 포기 또는 연기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원조제공자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충분한 고려를 한다.

第8條 特權, 免除 및 便宜

第9條 人員, 機材 및 財產의 通過

第10條 請求 및 補償

第11條 援助의 終了

(第12條~19條 省略)

〈現在까지의 批准國〉

〈早期通報條約〉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白러시아
共和國, 우크라이나共和國, 텐마아크, 핀란드
(작년 10월 27일 發効)

〈相互援助條約〉

노르웨이, 소련, 白러시아共和國, 우크라이나
共和國(금년 2월 26일 發効)